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
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현재 교통분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업무를 수행중이나,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광역버스 업무절차 정립 및 지속가능한 업무 수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와 관련된 업무로서, ‘타당성 분석’, ‘서비스 평가’, ‘기타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’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하는 규정 신설(시행령 제18조제5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8조제2항제7호 및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75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된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
 - 가. 면허발급 노선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
 - 나. 면허 연장여부 등 결정을 위한 서비스 평가
 - 다. 기타 면허와 관련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업무의 위탁)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.	제18조(업무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법 제8조제2항제7호 및 「 <u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</u> 」 제75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된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
	가. <u>면허발급 노선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</u>
	나. <u>면허 연장여부 등 결정을 위한 서비스 평가</u>
	다. <u>기타 면허와 관련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</u> <u>서 요청하는 사항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12